

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6 (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5. 23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5. 24(화) 제12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5. 2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- 가. 제안이유
 -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과세표준, 세율 변경, 재산세의 납기 등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군세 세목 조정 :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
 -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
 - 재산세 납기조정
 - 자동차세 세율조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세율, 과세표준, 재산세 납기를 정비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
-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, 재산세로 통합하고
- 재산세과세표준액은 공시가액의 50%를 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토록 하고
- 재산세 납기를 토지, 건축물, 주택에 따라 달리 정하며
- 자동차세 세율을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600cc이하는 cc당 140원, 영업용승용자동차 1600cc이하는 cc당 18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조문을 개정하고
- 중과세 대상지역과 세율적용, 과세기준일별 납기, 신고의무, 과세대장에의 등재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
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하였음

○ 이상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